

제416회국회  
(임시회)

##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7월24일(수)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소위원회 구성의 건
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8)
3.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10)
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63)
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5)
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41)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76)
8.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79)
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28)
1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339)
11.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33)
12.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474)
13.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5)
1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599)
15.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01)
1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25)
1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39)
1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79)
19.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31)
2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1)
2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0)
2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04)

---

### 상정된 안건

1. 소위원회 구성의 건	3
o 소위원장(문정복·조정훈·김대식) 인사	3
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8)	5
3.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10)	5
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63)	5
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5)	5
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41)	5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76)	5
8.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79)	5
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28)	5
1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339)	5
11.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33)	5
12.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74)	5
13.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5)	5
1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599)	5
15.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01)	5
1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25)	5
1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39)	5
1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79)	5
19.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31)	5
2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1)	6
2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0)	6
2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04)	6

---

(14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영호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월요일 사무처 인사에 따라 새로 보임한 직원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대훈 전문위원이십니다.

(인사)

앞으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은 소위원장 선출을 포함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원 구성 이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 1. 소위원회 구성의 건

(14시03분)

○위원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57조 및 제125조에 따라 의안을 심사할 소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그리고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각각 두기로 하고 위원회별 위원 정수와 정당별 배분 그리고 각 소위원회 위원장을 정했습니다.

먼저 법안소위는 더불어민주당 5명, 국민의힘 4명, 조국혁신당 1명 이렇게 모두 10명으로 하고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간사님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예결소위는 더불어민주당 4명, 국민의힘 3명, 조국혁신당 1명 이렇게 모두 8명으로 하고 국민의힘 조정훈 간사님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원소위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각각 2명씩 모두 4명으로 하고 국민의힘 김대식 위원님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배부한 유인물을 확인하시고 소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원장 선출을 포함하여 3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그리고 향후 소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개선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거나 간사의 요청을 받아 조치하기로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 o 소위원장(문정복·조정훈·김대식) 인사

(14시05분)

○위원장 김영호 선출된 소위원장님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인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안소위 문정복 위원장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문정복 위원 법안소위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중책을 맡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21대에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가 많은 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폐기된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는 교육부도 그렇고 각 위원님들께서,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민생과 관련한 것이거든요.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 좀 속도를 내서…… 그렇다고 그냥 가자는 것은 아니고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좀 속도를 내는 그런 법안심사소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감사합니다.

다음, 예결소위 조정훈 위원장님 인사 부탁합니다.

○조정훈 위원 감사합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장을 맡겨 주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부 예산이 거의 100조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큰 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산과 예산 그리고 기금 심사에 있어서 국가 교육의 정책에 맞는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성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을 모시고 열심히 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원소위 김대식 위원장님 인사 부탁합니다.

○김대식 위원 부산 사상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대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교육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 저한테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맡겼을까 생각을 해 보니까 제가 국민의 고충과 기업의 애로를 듣고 해결해 주는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고민정 위원님 또 김문수 위원님 그리고 서지영 위원님과 함께 잘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청원소위가 이번에는 바빠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위원회가 우수한 성과를 내고 다른 위원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완료했고요, 앞으로의 운영에 관해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법안소위 정수는 10명으로 21대 국회 7명에서 조금 더 늘었습니다. 조정훈 간사님께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자는 취지로 굉장히 강력하게 밀어붙이셨는데 결국 관철해 내셨거든요. 실제로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백분 공감을 하는데 또 우려되는 부분이 다들 있습니다.

우리가 위원 좀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당리당략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저희가 경험상 집중력 있게 법안소위를 다뤄야 되는데 조금 인원이 늘어나면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대신에 의사결정에 조금 우려가 생기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다 수도권에만 계신 게 아니거든요. 비수도권에도 계시는데 위원님들이 워낙 바쁘셔서 위원님들이 늘어날수록 위원님들의 약속을 잡는 사정들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렇게 돼서 혹시라도 법안소위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될까 좀 우려를 했는데요.

그래서 두 분 간사님께서 좋은 합의를 해 주셨어요. 교육위 법안소위 운영에 있어서는 합의문을 통해서 각각 서명을 해 주셨는데요, 서명 내용은 법안소위가 최소한 매월 두 번은 개회해서 충분한 법안을 심사·처리하겠다라는 의지를 담아 내셨거든요. 그래서 만일 정기국회 끝날 때까지 위원회의 개별 일정 등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로 법안

소위가 제대로 활동하지 못한다면 소위원회의 정수와 구성을 다시 원위치로 돌려 놓겠다라고 저희가 합의를 했는데, 이번에 법안소위 위원님 또 예산소위·청원소위 위원님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책임감도 따른다는 얘기를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월 2회 이상 법안소위를 열게 되면요 아마 국회 상임위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상임위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야 간사님들께서 좋은 내용을 합의해 주셨기 때문에 일하는 국회에 모두들 앞장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동의 청원 2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거나 회부될 예정입니다. 1건은 교육부의 2025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유보에 관한 청원이고요, 다른 1건은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한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입니다. 김대식 위원님이 굉장히 바빠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청원의 주제가 중요하고 시급한 심사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청원소위도 서둘러 심사에 착수하고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의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 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8)
- 3.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10)
- 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163)
- 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5)
- 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41)
-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76)
- 8.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79)
- 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328)
- 1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339)
- 11.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33)
- 12.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474)
- 13.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5)
- 1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599)
- 15.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01)
- 1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25)
- 1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39)
- 1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79)
- 19.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31)

2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1)

2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0)

2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04)

(14시10분)

○**위원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2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22항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21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8항, 12항 및 13항의 법률안은 대표발의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직접 듣겠습니다.

먼저 김원이 의원님 나오셔서 제8항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에 관해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김원이 의원** 존경하는 김영호 교육위원장님, 교육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목포 출신 국회의원 김원이입니다. 반갑습니다.

22대 국회에 저의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법안은 국립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지역 공공의료과정 전형을 별도로 마련하여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전남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전국에서 의대가 없는 유일한 지역인 전남권에 의대를 신설하고 신입생 중 일부에게 지역의사제를 적용하여 의료 취약지 내에 의사가 정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남, 특히 서부권은 섬이 많은 지역으로 대표적인 의료 취약지입니다. 우리나라 유인도서의 41%가 분포하는 곳이 전남입니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5%를 넘어 이미 초고령사회입니다. 지금도 전남 서부권 등 섬의 중증·응급환자는 배를 타고 나와 대학병원으로 이송하는 도중 골든타임을 놓쳐 위중한 상태에 이르거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전남도민과 서부권 등 섬 주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 없는 지역, 즉 전남권에 의대를 신설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국립목포대학교는 지난 1990년 도부터 교육부에 의대 신설을 꾸준히 요청해 왔습니다. 목포시민들은 지난 34년간 의대 신설운동, 목포대 의대 유치운동에 헌신해 왔습니다.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와 목포의대 유치는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21대 국회 지난 4년 내내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한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는 목포시민들의 34년간의 땀과 눈물과 헌신에 국가가 인정하고 보상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 여러분!

교육부는 이미 연구용역을 통해 목포대 의대 설치의 경제성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2019년 교육부에서 직접 의뢰한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용편익분석이 1.70으로 경제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으로 인한 생산 유발 효과가 2조 4000억 원에 이르고 직간접 고용 유발 효과가 2만 3000여 명에 이르는 등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가 2021년에 시행한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립·운영 방안 연구에서도 전남 서부권은 의료 인프라 및 중증·응급환자 치료 결과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 서부권의 의대 및 대학병원 설립의 비용편익분석도 1.26~1.44로 경제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필요하면 교육부와 전남도가 시행한 의대 설립에 관한 연구용역보고서를 교육위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는 곳이 다르다는 이유로 목숨값이 달라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포시민, 전남도민의 34년간의 숙원에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간 극심한 의료격차 극복을 위한 본 특별법안을 잘 살펴 주시고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원이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문수 의원님 준비되셨나?

○김문수 의원 저도……

○위원장 김영호 여기서 그냥 하시게요?

○김문수 의원 저도 가서……

○위원장 김영호 다음, 김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12항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에 관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김문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의 제안설명을 이렇게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지역에 따라 의료 접근성 및 혜택이 차이가 나는 의료 불균형 국가입니다. 의료 사각지대나 취약지가 존재하는 등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차원에서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지점이 많습니다.

전라남도는 다른 시와 다르게 의과대학이 설치되지 않은, 50만 이상의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곳입니다. 상급 종합병원은 전국 47곳 중에서 전남 한 곳으로, 한 곳도 사실상 광주권역에 아주 가까운 화순에 있습니다.

종합병원 접근성은 20.4km로 안타깝게도 꼴찌에서 세 번째, 응급의료시설 접근성은 14.3km로 여섯 번째입니다. 중증외상환자의 전원율은 12.6%로 전국에서 가장 좋지 않고 전국 평균 6.4%의 2배에 가깝습니다. 입원 및 외래진료의 자체 충족률은 각각 66.1%와 69.2%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수·광양·순천 등 국가산업단지, 대규모 산업시설이 대거 포진되어 있는 전라남도 동부권의 경우는 산업재해 재해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료 취약지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전라남도 1.7명으로 전국 평균 2.2명에 비해 많이 부족합니다. 동부권은 1.5명으로 더 부족합니다. 전라남도의 부족한 의사 수는 2022년 기준으로 993명으로 추정됩니다.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고 모집 인원을 1497명 늘렸지만 모두 기존 의대 40개교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의대 없는 지역에 대한 정부 조치는 없습니다.

정부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차원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고 있지만 의대 없는 지역 중심으로 의료 불균형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전라남도 소재 국립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대학병원을 설립하여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공공의료 기반을 확대하며 양질의 지역완결형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여 의료 불균형 및 진료 격차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이 법은 국립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대학병원을 설립하여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의료 인프라 취약지인 전라남도 지역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의료인을 양성하여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안 제1조입니다.

나. 국립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전라남도 내 의료 서비스 상황 및 지역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안 제2조입니다.

다. 교육부장관은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을 100명 내외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합니다. 안 제3조입니다.

라. 국가는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시설·설비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산업보건·첨단의료 분야 연구과제 수행과 특화 교육과정의 수립·운영 등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의 조속한 설치와 정착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안 제7조입니다.

이를 통해 전국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받는 의료 선진국 대한민국을 이루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김원이 의원님께서 목포대 의대 설립 법안, 저는 순천대 의대 설립 법안, 전남에서 동서부 간에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생활권이 오히려 인근의 영남 지역에 가까운 곳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사실은 두 군데 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한 곳만 선정해 오라 이렇게 하면서 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의료라든가 교육 또 식량안보 이런 필수적인 것을 갖고 둘 중의 하나만 선택하라고 한 정부의 기획안 자체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목포대 의대 법안과 제가 발의한 순천대 의대 법안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마는 한두 가지 다른 점은 저의 순천대 의대 법안에는 ‘국·공유재산은 무상 양여하겠다, 시 땅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지금 의료 부지가 순천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지원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인근 지자체라든가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좀 더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에 교육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전라도민들의 애절한 소망을 전라남도 출신의 김원이 의원님, 김문수 의원님께서 잘 전달하셨으니까 정부와 우리 국회가 두 의원님의 말씀을 도민의 뜻으로 잘 간주해서 더 많은 관심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혜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13항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해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정혜경 의원** 저에게 학교급식법 개정안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진보당 정혜경 의원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가장 기다리는 시간은 단연 점심시간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학창시절을 떠올려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1995년 학교 의무급식이 시행된 때로부터 벌써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엄마가 새벽에 싸 주시던 도시락을 먹던 시대에서 위탁급식을 지나 친환경 무상급식까지 학교급식의 질은 끊임없이 발전되어 왔습니다.

현재 학교급식은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강남 영동중 사태에서 보듯이 학교급식 종사자들이 고된 노동강도로 채용이 되지 않아 양질의 급식을 먹일 수 없는 사태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종사자들은 50도가 넘는 푹푹 찌는 급식실에서 폐암, 화상사고, 근골격계 질환의 고통을 감내하며 같이 일하는 동료가 쓰러져도 모를 지경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일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우리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맛있게 먹는 급식, 그 급식을 만드는 누군가의 생명은 단축되고 있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건강하고 질 좋은 학교급식을 계속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학교급식법에 일하는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인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고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는 학교, 누군가의 수고로움을 귀하게 여기는 교육현장으로 만들어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교육청의 급식실 조리실무사 일인당 급식 인원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리실무사 일인당 100명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가 경기도에만 1985개 학교, 88%에 이릅니다. 서울은 1259개교, 95%에 달했습니다. 최고 일인당 214명을 담당하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2023년 교육부의 학교급식 종사자의 폐암 검진 결과, 검진자 1만 8545명 중 폐암 의심 또는 매우 의심 소견을 받은 사람이 187명에 달해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권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고된 노동에 산재 문제 그리고 저임금 노동현장에 누가 일하러 오겠습니까?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다는 말이 있듯이 급식실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즐겁게 일해야 아이들에게 질 좋은 급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 번째, 학교급식법의 제정 취지를 개정해서 급식의 질과 식생활 개선에만 머무르지 않고 학교급식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도모를 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가를 하고, 두 번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급식실 종사자의 건강보장을 위한 책임을 지도록 임무를 부여하며, 세 번째 학교급식위원회에서 학교급식 종사자의 일인당 식수 인원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개보수 등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심의해 급식실 종사자의 적정 인원을 보장하고, 네 번째 심의위원회에 학부모 및 학교급식 종사자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해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자는 내용입니다.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좋은 취지의 법안을 교육위원회에 제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법률안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21대 국회의 전례를 따라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노트북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문정복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잠깐만요. 이번에는 대체토론 차례인데요, 문정복 간사님께서……

○문정복 위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자료 요청이요.

○문정복 위원 국민의힘 인요한 최고위원이 현재 연세대학교 사택 및 기숙사에 입주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연세대학교 확인 결과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자료들을 요청을 할 건데요. 인요한 의원의 연세대학교 기숙사 입주 관련한 전체 내용을 주십시오.

연세대학교 사택관리규정 제9조(퇴거)에 의하면 ‘사택입주자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사택을 15일 이내에 명도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사직 또는 퇴직을 하였을 때 또 특정 직책에서 해임되었을 때 또 휴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였을 때는 퇴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현재 인요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연세대 사택 또는 기숙사에 입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인요한 의원의 연세대학교 사택 및 기숙사 입주와 관련한 근거 규정을 챙겨 주시고요. 그다음에 입주기간 및, 그것을 입주 비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납부 내역을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일이 또 인요한 의원에게만 해당될 거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기숙사 입주자 명단 및 기숙사 비용 납부 내역을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요 지방대학교 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학교를 왔을 때 높은 등록금과 함께 솔직히 주거시설에 대한, 숙소에 대한 고민이 많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은 기숙사를 선호하는 거고 그 기숙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직 국회의원이면서 당의 최고위원인 의원이 학생들이 들어가야 될 기숙사를 점유하고 쓰고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명백한 특혜고요. 또한 사택을 쓰고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규정에 맞지 않는 의원의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통해서 관련 근거 규정들을,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도록 명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죄송하지만 연세대학교 쪽은 확인이 됐나요?

○문정복 위원 확인이 됐습니다. 인요한 최고위원께서 연세대에……

○위원장 김영호 연세대학교 재직 시절에 살았던 공관 내지 기숙사 시설을 지금 세브란스를 나오셨는데도 아직도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문정복 위원 거주하고 계십니다. 연세대학교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문정복 간사님이 요구한 사항은 교육부에서 자료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아직 확인이 안 된 사안이니까 확인부터 하고요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정복 위원** 저희가 확인한 내용이니까……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요.  
조정훈 간사님.

○**조정훈 위원** 자료제출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 당의 특정 의원의 이름을 거론하시고 특혜라는 말을 쓰셨는데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분명히 저는 학교에 인요한 의원님께서, 설립자의 자손과 관련된 그런 학교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현역 의원이, 다른 당의 현역 의원이 마치 본교에서 특혜를 받는 것처럼 추정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자료가 있는 다음에 그것이 드러나면 비판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가설을 세우시고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특혜라고 생각한다, 자료 요청하시는 것은 조금 앞서 나가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문정복 위원** 다시……

○**위원장 김영호** 문정복 간사님.

○**문정복 위원** 반론을 하자면, 무릇 공직자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도 고쳐 매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요한 의원께서 등록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다라고 하면 근거 규정을 내시면 됩니다. 만약에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셨다라고 하면 특혜가 분명하거든요. 이것은 연세대가 자료를 제출하면 알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오늘 이렇게 전체회의 때 이런 내용이 언급된 이상 인요한 의원님께서 빨리 입장을 내 주시면 일단락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인요한 의원님께서 아마 오늘 소식을 들으셨을 거고 또 연세대학교와 합의해서 개인정보에 준하지 않는 한 교육부에서 대응하시리라고 짐작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건 자료 요청한 자체를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문 간사님, 특정 의원의 이런 자료 제출하는 과정에서 특혜라는 확신을 공개적으로 발언하신 건데 만약에 그게 근거 규정에 있는 적법한 절차면 사과하실 겁니까?

○**문정복 위원** 잠시만요. 말씀을 하셨으니……

○**위원장 김영호** 한 번, 한 번, 지금 세 번째시고요. 한 번만 기회를 드릴게요.

○**문정복 위원** 국회의원은 겸직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겸직 금지니 당연히 연세대학교에 어떤 신분으로 기숙사나 사택에 들어가셨는지 저는 그 근거 규정을 받겠다라는 겁니다. 그 근거 규정 나오면 저희 또 따로 얘기하지요.

○**조정훈 위원** 근거 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혜라는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호** 여기서 공방이 계속되면 더 이상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되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고.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인요한 의원님께서 직접 입장을 밝히시든지, 아니면 교육부에서 자료를 제출하셔서 그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준혁 위원** 관련해서 한마디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영호** 이 이야기를 길게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준혁 위원** 아니, 짧게.

○**위원장 김영호** 예, 짧게 해 주십시오.

○**김준혁 위원** 김민전 위원님하고 저하고도 대학에 있다가 퇴직하고, 아마 연구실 바로 비우셨을 겁니다. 저도 연구실 비우느라고 고생을 좀 했는데…… 조정훈 위원님 말씀도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최소 공직에 있을 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민심서에 보면 해관육조라는 게 있습니다. 관직을 그만두고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갈 때 갖고 온 배낭만, 바郎만 갖고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점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늘 공직자가 삼가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도 그렇게 하고 관련된 내용도 철저하게 따르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영호** 이번 순서는 대체토론 차례입니다.

진선미 위원님, 대체토론인가요?

○**진선미 위원** 자료제출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난번 12일 날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육부장관께 의대 증원 관련한 기본적인 자료제출 요구를 했고 위원장님께서 자료제출을 해 달라고 경고까지 해주셨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진선미 위원** 그런데 저는 정말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저희가 의문이 되는 내용과 관련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6월 20일 날 했고요. 그런데도 전혀 아무런 의사표현도 없고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7월 12일 날—7월 8일에도 했고요—그 문제 제기를 했는데 교육부의 태도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자료를 제출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하기를 지금까지 한 번도 연락조차 없다가 어제 저녁 6시 30분에 겨우 연락이 와서 ‘소송 중이니 자료 제출을 할 수 없다’ 이 몇 마디로 끝을 냈다는 겁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서면으로 이미 자료제출 요구를 전달을 했고 그 내용들을 보면 일상적인 얘기들입니다. 이게 소송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여러 가지 중에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이 정도의 성의는 보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겨우 딱 두 마디 ‘소송 중이므로 제출할 수 없다’, 그러면 이걸 6월 20일 날도 얘기할 수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위원장 김영호** 그러니까요.

○**진선미 위원**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서 저희가 자료제출 요구한 내용들을 보내 드릴 테니 정확하게 교육부에 확인해서 어떤 게 소송에 미칠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제출을 못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해 주시고 마땅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부처가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를 방임할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데요. 위원장님, 잘 좀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이미 한 달 전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미 언급했습니다마는 교육위원회뿐만 아니라 국회가 가장 중점으로 두는 것은 중인 출석 문제와 자료 요청에 대한 정부의 협조입니다. 이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국회의 자료 요청을 무시한다든지 협조하지 않았을 때는 지난번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저희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진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입장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교육부도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최대한 성실하게 응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아마 차관 중심으로 해서 심도 있게 여러 번 검토를 한 걸로 제가 오늘도 보고를 받았는데요. 구체적인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의원실과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아니, 그렇게 원론적인 이야기 마시고요.

차관님, 이 문제 자료 제출하세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지금 부총리께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료의 성격이나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다시 상세하게 의원님실에 설명을 드리고.

지금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소송 진행 중인 사안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사실 자료 제출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2025년 정원 관련 자료로서 대학에도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학 정원과 관련돼 있는 문제가 아직 논쟁 중에 있어서 이 자료가 공개되었을 경우에 학교와 학생과 그리고 의대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 양상을 불러일으키는 우려들을 가지고 있어서 정책적으로는……

○위원장 김영호 그런 정무적인 판단은 자료 요청을 한 위원님이 하실 거고요. 소송 중인 부분과 충돌되는 그 단락 정도는 설명을 드렸어야지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모든 자료 요청을 소송 중이라고 거부를 하시면 저희는 차관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개별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님실에 방문해서 상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다시 저희가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아니, 지난번에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교육부가 그러면 신뢰를 잃어요. 그리고 21대 국회에서는 교육부가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다른 상임위보다 그래도 굉장히 협조적이셨거든요. 처음부터 이렇게 나가시면 안 됩니다.

○진선미 위원 한마디만……

○위원장 김영호 진선미 위원님.

○진선미 위원 제가 시간 때문에 자세한 얘기를 안 하고 위원장님실과 상의해서 이 문제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단순한 예.

말씀하신 대로 각 의대가 교육부에 제출한 의대 정원 증원 신청서 그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것만이 아니거든요. 그것도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적어도 의회가 지금 의대 정원이 당장 올해, 내년 이렇게 긴박한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있는지를 의회가 확인하지 않으면 누가 확인합니까? 의회가 그것을 견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제출 안 하고.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가 이 중의 하나가 어떤 거냐면 지금 현재 전국 의대생 등교 현황, 학교별 학생 수 및 등교·미등교 학생 수 현황 이거는 공문을 보내서 결석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런 여부들만 확인해서 제출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자료예요. 그런데 왜 교육부가 국회의원이 제출 요구한 자료가 어디에 쓰일지를 미리 판단하시는 겁니까? 저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말 가치중립적인 내용이에요. 현황 실태를 정리해서 제출해 달라고 한 것을 이걸 가지고 소송에 영향이 있다? 너무 편의적인 태도 아닙니까? 저는……

○위원장 김영호 하여튼 진선미 위원님의 자료 요청을 최대한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제출하시고요.

말씀 나온 김에 지금 의대 정원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가 안 보이고 있어요. 더욱이 국민동의청원서까지 5만 명 이상이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교육현장의 대혼란은 물론 국가 의료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진다는 국민들의 우려도 있는 거잖아요.

보건복지위는 이미 청문회를 한 번 실시를 한 바 있고요. 사실 저희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기도 한데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공청회라든지 청문회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장관님, 다음 번 전체회의 때 이번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의대 정원에 관련한 그간의 경과, 향후 대응 방안 등 교육부 역할과 책임을 중심으로 우리 위원회에 상세히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제가 충분히 드릴 테니까 지금 정부가 의대 학생, 전공의, 교수님들이 각자 생각이 달라서 실타래가 잘 안 풀리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교육부가 국회에 보고하고 여야 위원님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다음 번 전체회의 때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된 진선미 위원님 자료 요청 꼭 협조해 주시고요. 저희가 위원장실에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이 문제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저희가 법안 제안설명을 드렸는데 관련된 대체토론 차례거든요.

○백승아 위원 (손을 들)

○위원장 김영호 백승아 위원님, 대체토론 관련된 거지요?

말씀해 주시지요.

○백승아 위원 더불어민주당……

○위원장 김영호 죄송합니다.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지 않고 질의시간만 5분 드리겠습니다.

○백승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입니다.

먼저 7월 18일에 서이초 1주기 추모행사에 장관님께서 참석하겠다 하셨는데 약속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건에는 없지만 현장에서 체감한 문제들 종합해서 저도 서이초 특별법을 7월 5일 발의했거든요. 이 문제가 교육부의 약속처럼 소통하고 협력해 줄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안 가운데 학교안전사고 예방법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공제급여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액 부족 등을 이유로 학교나 교원에게 별도의 민사책임을 묻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형사책임을 제기하기도 해서요 속초에서는 현장 체험학습 관련해서 교사가 재판을 받고 있고 이 재판 결과에 따라 과면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장 체험학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현장 체험학습을 거부하는 교사들 또 그것에 반발하는 학운위 위원들 간에 여러 가지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장 체험학습 매뉴얼 부록3을 보면요 현장 체험학습 때 교사가 점검해야 되는 항목이랑 조치사항만 35페이지에 달합니다. 교사는 사실 안전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또 인솔 인원도 굉장히 부족해서 학생들이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호 노력을 다하여도 형사·민사재판에 노출된다면 그 어떤 교사가 현장 체험학습을 가고 싶을까요?

지금 현장 체험학습을 폐지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 체험학습에서 학생들의 안전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 책임을 다한 교사가 고소·고발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위원님 말씀 취지에 공감하고요. 정성국 의원님께서 직접 발의해 주신 법안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성실하게 협의해서 법안 통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승아 위원** 현장 체험학습에 필요한 안전조치 점검 업무를 저는 안전 전문가가 도울 수 있도록 해서 학생들의 안전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개별적인 그 부분들은 저희가 법안 심의하실 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아 위원** 그 내용은 법안에는 없는데 제가 볼 때 안전 전문가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부 교육청에서만 지금 안전요원을 쓰고 있거든요. 현재 제가 현장 체험학습 안전요원 배치에 대한 발의를 거의 마쳤거든요. 그때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저희가 검토해서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아 위원** 그리고 대학등록금 인상 요구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드리고 싶은데요.

아시겠지만 생활비 관련해서 오르지 않는 게 없습니다. 소비자물가 안정화 추세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과일, 야채 이런 식료품 가격도 천정부지로 올랐거든요. 이 상황에서 등록금까지 올린다고 하면 국민들이 도저히 생활비를 감당을 못 할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등록금 부담을 최대한 경감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백승아 위원** 그런데 물가가 오르고 학령인구 감소해서 대학 재정이 어려운 것도 사실

입니다. 그 부담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백승아 위원** 고등교육 특교처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끌어다 쓰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을 괴는 격이거든요. 교육부가 하는 늘봄학교, AI 디지털교과서 사업 이런 거 다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부담을 늘리고 있어요. 그런데 고등교육 재정 때문에 아이들 교육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장관님 내년도 고등교육 지원 국고예산 늘어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그 취지에 따라서 저희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예산 당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백승아 위원** 지금 고특회계 유효기간 내년 말까지인데 앞으로 어떻게 연장하실 건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고특회계는 일단은 기존의 회계를 충분히 늘려서 말씀하신 대학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요. 장기적으로 고특회계를 더욱 발전적으로 그렇게 발전시키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도 국회랑 더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아 위원** 지금 고등교육 예산 적고 변동성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한시적인 특별회계보다 고등교육 재정을 확대해야 됩니다. 안정적인 재원 마련 방안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고민 중이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같이 좀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아 위원** 어떻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련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고등교육 재정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또 방안들을 놓고 폭넓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백승아 위원** 대부분 대체적으로 원론적으로 대답을 하시는데요, 추상적으로. 그런 대답 말고 실질적으로 정말 회계를,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계신지 저는 궁금한 거예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빼 쓰려는 생각하지 마시고 고등교육 지원 국고 예산을 늘려야 된다고요. 준비하고 계시면 그걸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하다는 말씀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 올해 예산 관련해서 부처랑 협의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의원실과 정보도 드리고 같이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아 위원** 그러면 의원실로 자료 제출 요청 드릴게요, 지금까지 진행 상황.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아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AI 교과서 자료 요청드린 거 아직 안 주셨거든요. 지금 진선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왜 교육부가 위원의 자료 요청에 대응을 안 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AI 디지털교과서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개최하신 공청회 때도 저희 담당자가 가서 충분히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의원실하고도 계속 좀 소통해서……

○**백승아 위원** 계속 소통한다고 말씀만 하시고, 저희가 지난번 현안질의 때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도 안 주셨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 자료를 한번 최대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아 위원** 고등교육 예산도 의논하겠다고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진행 현황 보내 주시고 꼭 의사소통, 꼭 소통 함께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 하셨나요?

○**백승아 위원** 예.

○**위원장 김영호** 장관님, 자료 요청 얘기 자꾸 나오는데요. 교육위원회가 굉장히 교육 스럽게 잘하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법사위처럼 갑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최대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김영호** 조정훈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조정훈 위원** 문정복 위원님이 얘기하신 인요한 의원님 연세대 교수 사택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해 봤는데요. 연세대학교에서 이미 자기네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2005년 7월 장로교 한국선교사회가 문제가 된 사택 사용권을 연세대에 양도하면서 그 분들이 사택의 사용을 인요한 교수, 지금 인요한 의원에게 거주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연세대는 아시는 대로 기독교 정신에 바탕을 둔 선교사가 설립한 학교고요. 설립자들의 뜻에 따라 미국 장로교 지원 선교사인 인요한 교수에게 교내 사택 입주 및 사용을 허가했고, 물론 이 과정에서 교칙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지켰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만약에 나오면 동료 의원이신 인요한 의원은 이 뉴스로 인해서 괜히 뜻하지 않게 교내 사택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적으로 이용한 것처럼 비쳐질 위험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두 분이 쳐다보면서 하지 마시고요. 공방하지 마시고요.

○**조정훈 위원** 이것은 부적절한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이렇게 자료 요청을 그냥 하시면 되지, 동료 의원이 마치 방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특혜를 입어서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처럼 발언하시는 것은 저는 자료 확인을 하신 뒤에 하셨어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계속 아쉬움이 남습니다.

○**문정복 위원** (손을 두드)

○**위원장 김영호** 딱 한 번만 하시고요.

○**문정복 위원** 한 번만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분이 연세대학교 교수로 계셨다거나 퇴직한 교수시거나 설립자의 자녀로만 계셨으면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신분이 국회의원 신분이고 국회의원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겸직 금지도 있고. 그리고 아니, 왜냐하면……

○**조정훈 위원** 이게 어떻게 겸직에 해당한답니까?

○**위원장 김영호** 이해충돌 부분은 있을 수 있지요.

○**문정복 위원** 이해충돌이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신분이 된 전 설립자의 자손이 거기 사택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규정을

내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조정훈 위원 그 규정은 연세대에서 제출할 거고……

○문정복 위원 아니, 그 규정은 국회의원이 아닌 신분의 설립자 자녀에 대한 규정인 거고요.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의 인요한 의원이 들어갈 수 있는 근거규정을 내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 만약에 내가 학교를 설립한 저기였어. 그런데 내가 만약에 국회의원이 됐어. 그러면 연세대학교에 저런 규칙이 있는데 나도 학교에 들어가서 살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위원장 김영호 하여튼 자료를 최종 확인하고……

○문정복 위원 자료 받으면 됩니다.

○위원장 김영호 최종 확인하고 저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문정복 위원님의 문제 제기는 일반 국민들이 연세대학교에서 거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혹에서 시작된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자료 확인을 통해서 저희가 이 문제를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아니, 위원님께서 의혹을……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위원장 김영호 이제 그만하시지요. 이럴수록 문제가 더 커져요.

○조정훈 위원 아니, 커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호 아니, 최종 확인이 안 됐으니까……

○조정훈 위원 동료 의원이 이렇게……

○위원장 김영호 조정훈 간사님, 그러니까 최종……

○조정훈 위원 아니, 저는 이것은 동의가 안 됩니다.

○문정복 위원 제가 규정을 달라고 했지 아니, 그러니까 자료를 달라고 했지……

○조정훈 위원 규정을 달라고 말씀하시면 됐지 이런 식으로 의원들이 특혜를……

○문정복 위원 아니, 자료를 달라고 했지, 제가 뭘 어떻게 했길래요?

○위원장 김영호 그만하시지요.

○조정훈 위원 특혜라는 말씀을 쓰셨지 않습니까? 동료 의원이 특정 대학으로부터……

○문정복 위원 아니, 특혜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위원장 김영호 그만하시지요.

○문정복 위원 학생들이 들어가는 기숙사나 교직원들이 쓰는 사택에……

○위원장 김영호 잠시만요.

○조정훈 위원 그러면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사과하시겠습니까?

○문정복 위원 아니, 그게 규정을 봐야 된다니까요.

○위원장 김영호 그것은 두 분이 나가서 말씀을 하세요. 지금 전체 회의를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잘못하면 두 분 다 10분 퇴장합니다. 법사위처럼 갑니다. 그만하시고요.

대체토론 시간입니다.

대체토론하실 분 혹시 더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성국 위원 의사진행발언 조금 할게요.

○위원장 김영호 의사진행발언 또 같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성국 위원 아니, 그것 관련 없습니다. 위원장님께 좀 드리고 싶어 가지고……

○위원장 김영호 예, 하시지요.

○정성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교육위 하시면서 상당히 젠틀하시고 또 균형을 잘 잡고 계시는데 제가 갑자기 공포감이 좀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러니까 저희가 통제가 안 될 때는……

○정성국 위원 농담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법사위 그 모습이 국민에게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거든요. 어찌 보면 분위기 전환하시려고 하실 수 있는 말씀이신데 국민들이 볼 때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위원장 김영호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그것이 약간 위트였는데요. 다만 교육부에게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정말 엄격하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담은 겁니다. 이것은 여당 위원님, 야당 위원님 자료 요청에 정부는 정말 성실하게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다는 점 드릴게요.

그렇게 들리셨다면 제가 그런 표현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성국 위원 예.

○위원장 김영호 대체토론해 주시지요.

김문수 위원님.

○김문수 위원 김문수 위원입니다.

상식적으로 어떤 범인에 소속돼서 그 범인의 건물을 활용할 수 있지만 범인의 어떤 짓을 사퇴하고 겸직을 할 수 없으면 당연히 그 건물에서 나오는 게 상식적인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한 의혹 제기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영호 대체토론해 주세요.

○김문수 위원 장관님, 오늘 순천대 의대 그리고 목포대 의대 2개 법안이 올라 왔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위원님께서 여러 번 강조를 해 주시고, 그 법안의 취지는 전남의 의료체계가 훨씬 더 강화돼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교육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도로 모색하겠습니다.

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의대 정원 확대 이슈가 아직까지 잘 해결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갈등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게 해결이 돼야지 말씀 주신 법안의 실현을 위한 교육부의 방안들도 논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지금은 의대 정원 확대에 교육부가 집중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김문수 위원 계속 반복된 얘기인데 기존 의대가 있는 곳은 너무 많이 증원을 하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쪽에서는 제발 좀 줄여 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저희 전남 같은 경우는 아예 의대가 없는 곳이고, 그러면 오히려 그 줄인 부분을 저희 전남같이 없는 곳에 신설하면 자연스럽게 다 해결될 문제거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지금 의료계와 정부가 아직 소통의 채널이 잘 작동이 안 되고 있고 또 활성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소통이 충분히 되는 상황에서 위원님의 주신 그런 우려에 대해서도 충분히 감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수 위원** 그리고 지금 목포와 순천 이렇게 동부·서부 간에 사실은 같은 생활권이 전혀 아니어서 두 군데 다 필요한데 전남만 이렇게 한 곳을 굳이 하라고 한 이유는 뭐니까? 두 곳 다 필요한데……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지역 차원에서 해결이 되는 게 중앙정부로서도 어떻게 보면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지역 차원에서 조금 더 컨센서스, 합의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문수 위원** 저희 지역은 당연히 두 군데 다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법안도 그래서 각각 2개가 나왔잖아요. 저희 전남 지역은 두 군데 다 필요해요. 그렇게 합의를 해 오면 두 군데 다 해 주신다는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두 군데 다 하는 경우에는 분산되고 또 분산됐을 때 나오는 여러 가지 비효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검토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능하면 지역 차원에서 효과적인 의료체계 구축 방안들이 합의가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김문수 위원** 지금 경상북도도 저희하고 비슷한데 그런데 안동대에서도 의대를 100명 요청을 하고 포스텍에서도 50명 요청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문수 위원** 그런데 거기는 두 군데 다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잖아요. 거기도 그러면 한 군데만 하라고 하는 겁니까, 두 군데 다 하는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거기도 신설에 대한 요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를 시작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금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적으로 계속 검토를 하고 또 의원실과 지역과 의논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시기가 되면 그때 좀 더 활발하게……

○**김문수 위원** 경상북도하고 저희 전라남도가 사정이 비슷한 오지인데 거기는 이미 의대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또 안동대도 요청을 하고 있고 포스텍도 요청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하나로 해 오라고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전남만 유독 목포, 순천 양쪽에서 요청했는데 여기는 둘 중에 한 군데만 해 와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공정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지역에 따라서 또 조금 진전 상황이 달라서 아마 그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김문수 위원** 아마 그 부분을 검토를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아요, 장관님이. 그러니까 왜 경상북도 지역은 이미 한 군데 있는데 두 군데 신청 들어온 것도 하나로 하라는 정리를 거기는 안 하고 전남만 또 그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김문수 위원** 답을 해 보세요, 제발.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위원님이 제기한 문제의 절실한 그런 지역의 요구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느끼고 있고요, 또 필요하다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

튼 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문수 위원** 상식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학생인권법안이 하나 올라왔고 저희가 이미 토론회도 하고 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비슷하거나 조금 다르기도 한데 오늘 대법원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원이 인용한 것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문수 위원** 대법원이 인용했다고 하는 것은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가 당분간 유효하다 이 말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맞습니다.

○**김문수 위원** 최종적으로 어떻게 판결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이 인권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이다 이런 판단이 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적 논의나 입법예고도 없이 무리하게 폐지조례안을 의결해 놓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와 의원님들이 발의하고 지금 준비 중인 학생인권법 제정을 통해서 학교 현장이 인권 존중과 민주주의의 산실이 되기를 염원합니다. 모든 학생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학교에서 학습하고 이를 통해 교사를 포함한 다른 학교 구성원 그리고 우리 사회의 약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시민으로 모두가 성장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장관님께서는 이 학생인권법 또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지난번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만 학생인권은 교육 구성원인 교사, 학생, 학부모 간의 인권이 상호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큰 원칙을 가지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인권조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모델 조례를 제시를 하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국가 차원에서 중앙정부는 지금 말씀드린 상호 간에 인권의 조화와 균형을 강조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교육현장에서 그런 방향으로 충분히 의견 수렴이 되고 또 조화로운 그런 권한과 인권이 추구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위원** 학생인권이 존중돼야 된다는 것은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렇습니다.

○**김문수 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법안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도 인정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협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수 위원** 어떤 내용이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는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학생인권이 교사의 교권과 학부모의 권한과 동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과 별개로 그렇게 다루어질 사안은 아니라는 그런 큰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문수 위원** 그러면 교권을 침해하지 않는 학생인권법은 찬성하시는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강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문수 위원** 그러니까 교권이 침해되지 않는 학생인권법은 찬성하시는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런데 그 법안의 어떤 맥락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협의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주시면 저희 교육부에서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검찰 독재 정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학생인권법, 교권법을 통과시키느냐 마느냐, 거부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저는 우리는 독재정권입니다, 아닙니다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법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도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민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김민전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검찰 독재 정권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도무지 동의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법이 많은 것이 결국 장땡이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닙니다. 법이 많아도, 왜 그러면 지금까지 학생인권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는가라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개딸, 전체주의 정당의 위원님들이 여기 와 계십니다라고 하면 어떠시겠는가라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용어들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고민정 위원님.

○**고민정 위원**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상임위 운영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여기는 토론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신의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 장관에게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 중에 상대 당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언급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도 통상적으로는 ‘김민전 위원이 이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이렇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조정훈 간사님이 잘 아시지요. 그게 그냥 국회의 관례였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그랬는데 지난번에도, 그런데 그때는 김민전 위원님이 안 계셔 가지고, 그러니까 상대 위원의 질의나 답변 등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데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인용이 되는 것까지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서 마치 토론하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운영되는 것은 상임위 관례상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조정훈 위원님은 재선 위원님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상임위 전체회의 때 나누었던 얘기 중에서 웬만해서는 동료 위원의 질의 내용을 지적하지는 않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국회의 관례로 다들 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선 위원님들이 가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제기를 하시는데 아마 국민의힘 선배 위원님들께 한번 여쭤보시면 그 문제에 대해서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은 문제에 대해서, 상대 위원님들의 어떤 발언에 대해서 또 그 문제를 제기하시면 이것이 원만한 의사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말꼬리가 잡혀서 계속 공방이 되고 교육위원회 분위기는 상당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하게 인신공격 내지 정말 명예를 훼손당했을 정도의 치명적인 발언에 대해서

는 종종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할 때는 있습니다마는 그냥 위원의 어떤 소신 발언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과 좀 다르다고 생각할 때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반박할 수는 있어도 직접 그 위원님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하나하나 문제 제기하는 것은 상임위 활동에서는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민전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조정훈 위원님이나 두 분 중에 한 분만 하세요.

○조정훈 위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조정훈 위원님이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

○조정훈 위원 고민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위원님께서 발언하는 것 일일이 다, 상대 위원의 질의나 그것에 평을 하지 않는 관행도 존중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저희가 집권 여당인데 저희 집권 여당에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을 쓰시면서 그것이 아닌 것을 증명하라 지금 그런…… 정부에 목포의대 설치 요구하시는 것 아니십니까?

○김문수 위원 아, 학생인권법.

○조정훈 위원 그거잖아요, 지금. 그때는 아주 조용하게 말씀하시면서 이것 얘기하시면서 검찰 독재 정부가 아닌지 증명해 내라 이렇게 가시면 저희를 자극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최대한 각자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되, 이게 민주당의총도 아니고 국민의힘 의총도 아니고 상대가 있는 상황에서 상대 정부…… 저희가 집권 여당인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평을 듣고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교육에 관한 정책을 질의할 때 굳이 이런 자극적인 표현을 안 썼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 드립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런데 제가 교육위원회하고 다른 상임위도 했지만 이 정도 수위는 여당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관용을 베풀어 줍니다.

○조정훈 위원 검찰 독재 정부라는 말을 들어야 된다고요?

○위원장 김영호 듣고도 얘기를 다, 어느 정도 문제 제기는 안 해요.

○고민정 위원 그만 정리하시지요.

○조정훈 위원 그래, 정리하시지요. 저희 이제 그만할게요, 그 대신.

○위원장 김영호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아까 마지막으로 간사님께서 정리하시기로 했고요.

또 대체토론하실 분 계세요?

아까, 순서가 정성국 위원님이십니다.

○정성국 위원 안 하려고 했는데 인권에 대한 게 나왔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네요.

○위원장 김영호 학생인권법.

○정성국 위원 김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생 인권 중요합니다. 공감하고요. 그런데 제가 현직 교사로 있었을 때 학생 인권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강조되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사회가 많이 깨달았지요. 선생님들의 과도한 체벌이나 또는 학생에 대한 인권을 모독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개선이 되면서 많이 좋아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시다시피 서이초 사건이 일어난 결정적 계기가 사실은 그 균형의 무너짐이

있었거든요. 최근에는 학생 인권이 너무 강조되고 교권이 이렇게 추락하다 보니까 그래서 서이초 사건이 사실 터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한국교총 같은 경우는 학생인권 조례가……

○위원장 김영호 장관님께, 시선을 장관님으로 봐 주십시오.

○정성국 위원 죄송합니다. 시선을 너무 보니까 좀 부담스러우셨지요?

장관님, 한국교총에서는 사실 학생인권 조례를 설문조사해 보면 84%가 학생인권 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번에 학생인권법을 추진하겠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또 한국교총에서 해 보니까 79%가 반대한다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서이초 사건의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도 상대적으로 학생의 인권은 많이 치킨는데 교권은 실질적으로 많이 추락하고 아동학대 신고가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이렇게 학교에 환을 치는 것은 결국은 지나친 학생 인권을 강조하고 학생에 대한 보호를 너무 강화하다 보니까 이 교육조차도 학생을 보호해야 된다는 명분하에서 이렇게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교총의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도 보면 지금 학생 인권이 많이 좋아졌고 교권이 실질적으로 더 회복이 돼야 된다는 의견이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상정적인 게 서이초 사건인데, 장관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작년에 안타까운 서이초 사태 이후에 교육계가 같이 함께 많이 깊이 반성하고 또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교사와 학생 또 학부모까지, 학부모의 악성 민원도 상당히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3주체들 간에 서로 존중하고 또 서로의 인권과 권한을 존중해주는 그 문화가 결국은 학교라는 공동체 또 아이들이 성장하는 공동체에서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 함께 중요한 교훈으로 이렇게 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 차원에서는 세 주체의 상호 존중을 담은 조례를 권장을 했고요. 또 정책적으로도 교권 5법이라든가 이렇게 법제화를 통해서 교권을 더욱 신장하는 쪽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국 위원 지금 대표적으로 학생인권 조례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은 학생인권 조례입니다, 학생인권법이 아니라. 하위개념의 법인데도 불구하고 휴식권이라는 게 있어요. 자는 학생을 수업 중에 깨울 수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자는데 선생님이 수업할 때 깨울 수가 없는 것까지 있었고요, 교실에서는 차별 금지가 있습니다. 칭찬 학생에 스티커를 붙이면 그 스티커를 받지 못한 학생이 차별받았다고 해서 항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됐거든요.

그래서 교실에서는 학생을 마음껏 칭찬하기도 어렵고 자는 학생을 깨울 수도 없고 교실 붕괴가 일어났다는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아동학대 신고까지 지금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교권 5법이 실질적으로 실효를 느끼지 못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얼마 전에 있었던 서이초 추모제에서도 여전히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다시 학생인권법을 발의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3주체 간에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같이 함께 만들어 가는 노력을 해야 되는 지금 시점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성국 위원** 그래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닌데 분명한 것은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의미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교원들이 그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50만 교원들이 다 그 부분을 바라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 시기에 또 느닷없이 학생인권법이라는 그 부분을 법으로 발의해서 제정하겠다는 부분에서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도 밝혀 주셔야 되겠고요. 또 학생인권법이 만약에 제정되게 되면 교실에 일어날 그런 과장들 이런 부분들을 예측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구체적인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법사위나 이런 데 더 논의를 통해서 계속 교육부의 입장을 표시도 하고 논의도 드리고 협의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국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 (손을 두드림)

○**위원장 김영호** 의사진행발언은 아니시지요? 대체토론……

○**강경숙 위원** 의사진행은 아닙니다. 의사진행은 아니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위원장 김영호** 대체토론?

○**강경숙 위원** 예, 덧붙여서 대체토론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러니까 학생인권법에 대한 대체토론이란 말씀이시지요?

○**강경숙 위원** 예.

○**위원장 김영호**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짧게 드리겠습니다.

정성국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좀 자제하려고 했는데 안 할 수가 없어서요.

○**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이름을 직접 거론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강경숙 위원** 조국혁신당 강경숙입니다.

이 자리에서 학생인권법이 발의되는 것이 옳으냐, 마느냐 그런 것을 토론하는 것은 너무 심도가 있는 것 같은데 학생인권법하고 교권이라는 것을 이렇게 대치되는 그 프레임을 잡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인권의 감수성이 높아지면 교권도 같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도 보고되고 있고요. 1946년으로 알고 있는데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된 이래로 인권은 굉장히 각계 분야들에서 되게 발전되어 왔고요.

지금 유엔의 여성 인권, 장애인 인권, 그래서 8개가 우리 국회에서도 인준이 되었는데 학생 인권을 사실 제대로 살려 내는 것은 우리 교육계에서 너무나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다 민감성 있게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되면 당연히 교사들에 대한

권위도 살아나는 것이에요. 훈육이 안 되는 것하고 아동, 학생 인권이 안 살아나는 것으로 알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장관님께 질의 좀 해 주세요.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이상이시군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오늘 법안소위를 구성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인권법이나 교권회복법도 상호 존중하는 체계로 가는 거잖아요. 혹시 법안소위에서 논의하면서 각각의 법이 한쪽, 교사나 학생 인권에 침해됐을 경우에는 법안소위가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잘 조정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정성국 위원님도 학생 인권을 지금 부정하는 게 아니라 존중하자는 거거든요. 각각 존중하자는 그 큰 틀의 합의는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존중하면서 법안소위에서 법안을 잘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세요?

오늘 처음 대체토론하시는 서지영 위원님.

○서지영 위원 부산 동래구 국회의원 서지영입니다.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을 보고 지금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적인 논의와 흐름에 좀 배치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방의 교육청에서 이렇게 쭉 해 왔던 조례, 시·도의회에서 해 왔던 조례가 폐지되는 움직임이 나타나자 이제는 이것을 법제화시키겠다는 취지로 이런 법안을 제출하신 것 같은데.

장관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한번 제가, 학생인권 조례와 관련하여 2010년부터 제정이 돼서 지금 한십사오 년 정도 진행이 되면서 이게 순기능을 가져왔다기보다는 역기능을 가져온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이 있고 논란도 많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방향성도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도 좀 내고 해야 되지 않나라고 여쭤봤을 때 그것은 교육부보다는 시·도의회와 또 교육청의 소관이기 때문에 조금 소극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법률안까지 제출이 됐거든요. 법에 헌법도 있고 교육기본법도 있는데 이 법률안이 절차와 법의 제정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앞에서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의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안소위에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큰 취지에 대해서는 학생 인권 또 교권 또 학부모의 권한 이런 것들이 상호 존중되는, 조화롭게 존중되고 그런 문화 속에서 아이들이 법을 준수하는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하는 곳이 학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지난 1년 동안 서이초 이후에 그래도 많은 교훈이 있었고 국회가 또 잘 대응을 해 주셨고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에도 국회의 지원 덕분에 큰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할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계속 좀 상호 존중의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법안소위에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법안소위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도 좀 논의를 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참 옥상옥인 법을 이렇게 제출을 해서 우리가 소중한 시간에 이렇게 실효성이 없는 법안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학생 인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사들의 인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학부모도 교육의 주체로서 학부모의 여러 가지 역할과 입장에 대해서 우리 다 존중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헌법이 있고 또 교육기본법에서 충분히 모든 주체들의 인권에 대해서 보장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될 바인데 이미 다 상위 법령에 있는 것을 다시 조례를 폐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니까 이것을 법제화해 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입법 과정에서의 낭비 요소도 있고 행정력의 낭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다음에 소위에서 우리가 이 법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조금 더 내용 있고 심도 있는 내용으로 교육부의 시각과 입장도 정리를 해서 의견을 꼭 제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지영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아까 서울시의회에서 조례를 폐지했고 또 재의결을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의회에서 또 대안도 내놨습니다. 그 대안이 보면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도 의결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의 인권 당연히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인권과 권리에 못지않게 책임도 우리가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교육적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권리와 책임이 존재할 때 민주주의가 제대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이고 민주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 모든 교육 주체들이 돋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교육청의 입장만을 가지고 마치 이것이 대법원의 입장인양 아니면 이 사회의 지배적인 입장인 것처럼 어떤 특정 입장만이 옳다고 얘기가 되는 것은 굉장히 여론을 호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의 사례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한 십사오 년 동안 누적돼 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도 정리를 하시고 법안소위에서 충분한 교육부의 입장도 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호** 서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혁 위원님께서도 대체토론이신 거지요?

○ **김준혁 위원** 예.

수원정의 김준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말씀하셔서……

저는 이번에 올라온 모든 검토 법안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그냥 쭉 장관님한테 좀 읽어만 드리려고 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김준혁 위원 어떤 검토안이 있는지를 여기에 읽어 오신 분들이 계신지 잘 몰라서 제가 쭉 읽어 드리겠습니다.

뒷부분만 짧게 읽겠습니다.

이 법안이 공감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안들이 같이 다 담겨 있습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의 경우 학생 인권은 법률적 관점보다는 문화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고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권리이므로 특정 주체만을 대상으로 인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기존 법령에 제시된 조항 및 용어 등에 대한 해석 차이 등에 따른 불필요한 논란 및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음. 약간의 반대 의견이 있는 거지요.

전라남도교육청 역시 보편적 정당한 가치에 해당하는 학생 인권에 대한 내용이 이미 상위법으로 제정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법제화는 불필요하며 시·도교육청별 지역의 특성과 학생 실정을 반영한 자율적이고 현실에 적합한 방법으로 학생 인권 보호기관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법률 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와 달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학생 인권이 존중되어야 하므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동의한다는 입장이고 그 외 서울시교육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은 법률안의 제정에 동의하나 약간의 일부 안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전국의 광역시 교육청이 기본적으로 학생 인권과 관련해서는 모두가 다 동의를 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 인권에 대한 것은 존중하되 이 법안이 필요할지 안 할지에 대한 논의는 또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개의 교육청은 이 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과 관련해서 일방적으로 무조건의 개념들은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법안소위에서 장관님과 교육부에 계신 분들과 법안소위 위원들이 합리적 방식으로 토론을 하는 것이 좋겠다. 기본적으로 이 법률 검토안에 나와 있는 의견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 대해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토론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훈 간사님 말씀이 저희가 법안소위에서 충분히 다뤄질 문제기 때문에 대체토론은 법안소위 위원이 아니신 분에게만 허용하자라는……

○조정훈 위원 아니, 그분들 중심으로 가자.

○김문수 위원 그래도 설명 한 번만 잠깐 드리고……

○위원장 김영호 그리고 대체적으로 다 한 번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더 이상……

○김대식 위원 법안소위에 가서 하시지요.

○김문수 위원 2분만.

○위원장 김영호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김대식 위원 제안설명하셨으니까 법안소위에 가서 하시지요.

○김문수 위원 2분만 그래도……

○위원장 김영호 2분 하지 말고 1분 30초로 끊겠습니다.

짧게 해 주세요.

○김문수 위원 빨리 해 보겠습니다.

서로,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출생지·등록지 등의 주된 거주지를 말한다, 출신 국가나 출신 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등등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다음에 피부색, 사상·정치적 의견, 실효된 전과, 병력, 징계, 거주 지역·형태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여기서 어떤 항목이 구체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위원장 김영호 아니, 이걸 위원님께 여쭤보시면 안 되고……

○김문수 위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조정훈 위원 이것은 대체토론이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영호 이건 토론……

○김문수 위원 예, 가서 하시고……

그러니까 왜 제가 이 얘기를 했냐 하면……

○위원장 김영호 질의를 해 주십시오.

○김문수 위원 여당 위원님들께서 주로 말씀하실 때 구체적인 항목을 얘기하지 않고 너무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해서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도 했으면 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학생인권 조례나 법에는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징역을 받는다든가 처벌받는 조항 자체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그리고 그 처벌조항들은 다 어디에 가 있느냐 하면 아동복지법에 있습니다. 거기에 정서적 학대를 하면 징역 몇 년, 경찰서에 신고한다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 학생인권 조례나 법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렇게 해서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이상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항부터 22항까지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문정복 소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수고해 주십시오.

서면질의는 따로 제출하신 게 없고요.

장관님, 아까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번 전체회의 때 정부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준비해 오셔서 현안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문제 또 국회와 함께 논의할 문제들을 정리하셔서 국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그리고 언론인분들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산회를 선포해도 되겠지요, 하실 말씀 충분히 하셨으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 소위원회 구성 명단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법안심사(10인)	고민정 김준혁 ◎문정복 백승아 정을호	더불어민주당(5)
	김민전 서지영 정성국 조정훈	국민의 힘(4)
	강경숙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예산결산기금심사(8인)	김문수 박성준 백승아 진선미	더불어민주당(4)
	김대식 김용태 ◎조정훈	국민의 힘(3)
	강경숙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청원심사(4인)	고민정 김문수	더불어민주당(2)
	◎김대식 서지영	국민의 힘(2)

◎표시는 소위원장임

### ○출석 위원(16인)

강경숙 고민정 김대식 김문수 김민전 김영호 김용태 김준혁 문정복 박성준  
백승아 서지영 정성국 정을호 조정훈 진선미

### ○위원 아닌 출석 의원(2인)

김원이 정혜경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전문위원 강대훈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교육부

부총리겸장관 이주호

차관 오석환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인재정책실장 최은희

책임교육정책실장 김연석

대변인 구연희

정책기획관 배동인

인재정책기획관 심민철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최창익

학생건강정책관 이해숙

교원학부모지원관 고영종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 김천홍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 전진석